

碩士學位論文

中國與 韓國 企業會計基準 比較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會計學科

宋海榮

2009年 2月

中國과 韓國 企業會計基準 比較 研究

指導教授 康 熙 壽

宋 海 榮

이 論文을 會計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2月

宋海榮의 會計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9年 2月

목 차

개요.....	1
제I장 서론.....	2
제1절 연구배경.....	2
제2절 연구 목적, 방법 및 구성.....	3
제II장 선행연구 및 회계환경 고찰.....	4
제1절 선행연구.....	4
1) 중국국내의 선행연구.....	4
2) 한국국내의 선행연구.....	4
제2절 사회제도 환경.....	5
1) 역사와 회계환경.....	5
2) 법규체제와 회계환경.....	6
3) 교육 및 사회문화가치와 회계환경.....	6
제3절 회계제도 환경.....	6
1) 중국회계기준에 대한 소개.....	7
2) 한국회계기준에 대한 소개.....	10
제III장 중·한 회계기준에 대한 소개 및 비교.....	13
제1절 기본적인 회계기준의 비교.....	13
1) 회계기준내용의 비교.....	13
2) 회계충치의 비교.....	13
제2절 자산 (Asset)의 비교.....	15
1) 재고자산 (Inventory)의 회계처리 비교.....	16
2)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의 회계처리 비교.....	18
3) 영업권 (Goodwill)의 회계처리 비교.....	20
4) 투자지분증권-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계처리 비교.....	22
제3절 부채 (Liability)의 비교.....	25
제4절 자본 (Capital)의 비교.....	26
1) 중국 자본 구성 항목의 소개.....	27

2) 한국 자본 구성 항목의 소개.....	29
제5절 수익 (Revenues) · 비용 (Expenses) 및 이익 (Income)의 비교.....	29
1) 수익 · 비용의 비교.....	29
2) 이익의 산출과정 비교.....	31
제6절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의 비교.....	32
1) 양국의 재무제표 종류의 비교.....	32
2)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의 비교.....	33
3)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의 비교.....	34
4) 현금흐름표 (Cash Flow Statement)의 비교.....	37
5) 자본변동표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의 비교.....	38
제7절 연결재무제표의 비교.....	39
1) 연결재무제표의 목적 비교.....	39
2) 연결재무제표의 종류.....	39
3) 연결재무제표의 접근방식.....	40
4)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비교.....	42
제IV장 중 · 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45
제1절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45
1) 국제회계기준 (IFRS)도입의 필요성.....	46
2) 국제회계기준 도입상의 어려운 문제점.....	46
제2절 중 · 한의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현황.....	47
1) 중국의 IFRS 도입현황.....	47
2) 한국의 IFRS 도입현황.....	48
제3절 중 · 한 · 국제회계기준의 차이점.....	50
제V장 결론.....	53
참고문헌.....	56
Abstract.....	58
<부록 1> 중국회계기준의 발전사.....	60
<부록 2> 중국 기업회계기준2006.....	61
<부록 3> 중국 재무제표 양식.....	63

표 목 차

<표 2-1> 한국회계기준원의 연혁.....	11
<표 3-1> 회계총칙의 비교.....	14
<표 3-2> 자산분류 비교표.....	15
<표 3-3> 채고자산 비교표.....	17
<표 3-4> 무형자산 비교표.....	19
<표 3-5> 영업권의 비교표.....	21
<표 3-6>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비교표.....	22
<표 3-7> 부채분류의 비교표.....	25
<표 3-8> 자본구성의 비교표.....	27
<표 3-9> 중국의 잉여공적금 구성표.....	28
<표 3-10> 재무제표 종류의 비교.....	33
<표 3-11> 연결재무제표의 종류 비교표.....	40
<표 4-1> 한국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기 및 대상.....	49
<표 4-2> 중·한·국제회계기준의 차이점 비교표.....	51

中國과 韓國 企業會計基準 比較 研究

개 요

회계란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실체에 관한 계량적 정보를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1992년부터 중국과 한국 수교 후 양국의 경제교류와 상호경제협조, 투자규모의 지속적인 증대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밀접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경제체제와 사회 환경의 차이에 따라 회계법규, 회계처리방법, 회계표현 양식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 (중국)의 대 중국 (한국)교역활동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회계영역에 대한 상호연구, 그리고 상호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과 한국의 회계기준의 주요 차이를 제시하며 국제회계기준의 합치가 양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중국, 한국의 회계기준에 대한 재무회계의 총칙, 재무제표 요소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종류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은 양국의 회계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점은 주로 자산의 회계처리에서 볼 수 있다. 둘째, 회계환경의 차이는 양국 회계기준차이의 근본 원인이다. 셋째, 자본시장이 점차로 국제화되고 투자자들과 다국적 법인, 회계법인 등으로 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비교 가능성의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의 합치는 회계영역의 추세이다.

[키워드]: 회계환경 중국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합치

제 I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회계란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실체에 관한 계량적 정보를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오늘날 기업은 기업의 내 외부에 많은 이해관계자를 가지고 있다. 이들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영활동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업은 이들 이해관계자들을 위하여 기업에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회계에 관한 정보이다. 이들 정보를 위하여 기업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에 관한 자료를 측정, 분류, 요약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회계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0년 전 세계가 중국의 급속한 발전을 주시하여 왔다. 1978년 개방이후 중국의 경제 체제 개혁과 개방 확대 및 중국정부의 다양한 외자유치 정책 시행으로 외국의 대 중국투자는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로써 2001년 11월 9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한국의 경제 발전사는 1960년대 초반 이후 현재 약 40년간의 발전사이다.

1992년부터 (중·한 수교 후)중·한 두 나라의 경제교류와 상호경제협조, 투자규모의 지속적인 증대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밀접해지고 있으며, 2005년 말 까지 13,612 (강철승, 2006)건을 넘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진출 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국에 투자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양국간의 회계기준상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양국에 진출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회계정보는 작성지가 외국이다 보니 언어, 관습, 제도 등의 환경이 달라 자국에 있는 이해관계자들로서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과 한국의 경제체제와 사회 환경의 차이에 따라 회계법규, 회계처리방법, 회계표현 양식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 (중국)의 대 중국 (한국) 교역활동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회계정보의 근간을 이루는 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되어 투자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양국간의 회계영역에 대한 상호연구, 그리고 상호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제2절 연구 목적, 방법 및 구성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FTA 체결에 대비하여 중국, 한국의 회계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연구를 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을 이론적으로 비교하여 양국의 회계기준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양국의 회계환경을 살펴보았다. 회계기준은 회계실무상에서 응당 준수해야 할 규범 혹은 지침이다. 또한 회계정보 질량을 보증하고 회계산업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척도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회계기준의 차이가 어느 정도이며, 그 차이가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 한지를 고찰한다.

둘째, 요즘 세계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이 통일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한 양국은 국제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현황을 고찰하고 중·한 및 국제회계기준의 차이점을 총괄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중국, 한국의 회계기준에 대한 재무회계의 총칙, 재무제표 요소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종류 및 양국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현황을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장,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방법과 구성을 기술하였다.

II장, II장, 중·한 두 나라의 선행연구 및 회계환경을 고찰하였다.

III장, 중·한 회계기준을 이론적으로 비교하여 양국 회계기준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IV장,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토픽인 국제회계합치가 중·한 양국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중·한 회계기준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V장, 연구의 결과를 총결한다.

제 II 장 선행연구 및 회계환경 고찰

제1절 선행연구

1) 중국 국내의 선행연구

金香淑, 嚴基昊(2001)는 한국 회계의 발전 및 특징을 명백히 논술했다. 연구에서는 한국회계를 도입기, 발전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주요 사건을 기술하였다.

薛清梅(2004)는 한국의 회계개혁이 중국 회계에 시사하는 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미래의 회계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개혁방향은 회계기준의 제정기구, 회계기준의 제정절차, 회계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劉玉廷(2004)은 중국 「재정부」 산하의 회계기준위원회의 개편을 소개하고 회계기준위원회의 개편에 의한 행정체제 및 회계기준제정기구간의 관계를 논술하고 나서 중국의 회계기준체계 정비의 미래를 짚어본다.

최순희, 張亞洲(2005)는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제로 전환기에 있는 중국의 현 단계 회계적 환경과 회계적 특성에 입각하여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를 이룩하는데 저해 요소를 분석하고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과정에 해결해야 할 과제와 국제화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鄭基英, 崔順姬(2006)는 한국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개선방향을 논술했다. 그 단점은 재무회계개념체계가 재무회계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더 많은 개혁을 하여야 한다.

2) 한국 국내의 선행연구

최상문, 김확열(1995)은 중국 주식제 기업회계제도를 소유형태에 따라 주식제 기업의 회계제도, 주식제 향진¹⁾기업의 회계제도 및 주식제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제도를 분류하였다. 각 소유형태별 주식제 기업의 회계제도는 그 소유형태의 특이성을 회계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유형태별 주식기업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는 사회주의 소유형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선도하는 주식제를 회계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회계제도의 특이성과 자본주의 국가의 회계제도와의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강철승(2005)은 한국, 북한, 중국, 일본과 관련된 동북아 교육환경의 변화라는 측면과 북한의 개방과 관련된 규제 모델로서 중국 모델의 선택가능성으로 볼 때, 남

1) 향진(鄉鎮): 규모가 작은 지방 도시

북경협과 관련한 회계규제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정운오(2005)는 1979년 체제개방이후 중국이 진행해 오고 있는 회계체도의 정비 노력을 고찰했다. 결과는 중국의 회계정보의 관련성 보다는 신뢰성을 더 강조하며, 회계기준의 제정도 정부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김문철, 안영균, 정혜영(2006)은 한국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수용하는 경우에 발생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비책에 대하여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전면 수용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회계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제2절 사회제도 환경

회계는 기업 환경의 소산이며, 한 나라의 기업 환경은 곧 그 국가의 역사, 가치관, 정치경제제도 등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고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회계기준이 그 국가의 기업 환경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였는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각 국간의 회계상의 차이는 주로 이론정립에 해당하는 역사,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에 따른 정치체제, 교육 및 사회문화적 가치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아래 중·한 회계환경에 관한 역사적, 정치 체제적, 교육 및 사회문화가치적인 차이를 소개한다.

1) 역사와 회계환경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세력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세력의 진영으로 분리되어 대치상태에 처해있었다. 일본이 패전한 후 미국은 한국의 경제 후원국이 되어 많은 경제적 원조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영향하에 한국은 미국의 사회제도와 경제구조를 모델로 삼게 되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었고 미국식 교육과 서양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동서양 문화가 혼재하고 있다. 중국은 건국초기부터 소련의 정치적 영향과 경제적 원조를 받아 왔으며 개방 후 소련의 경제제도를 답습하여 공산당 유일집권과 인민민주주의 사회제도를 도입하고 경제면에서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도입하였으며 계획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역사적인 환경은 회계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나 일본의 회계는 자본주의 회계제도로서 기업 관련자의 합리적인 경제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적인 시스템이며 소련의 회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제도에서 국가가 전국민

의 근본이익의 대표자로서 사회의 경제자원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회계적 시스템이다.

상술한 원인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회계 발전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중국은 소련의 영향을 받았다. (정건영, 최순희, 2001).

2) 법규체제와 회계환경

중국에서는 인민대표대회에서 회계법을 제정하고 「재정부」에서 회계법에 따라 회계기준을 제정한다. 따라서 중국의 재무회계는 아직도 사회주의적인 회계체제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다.

한국은 정치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앙집권적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그런데 1997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한국의 재무회계기준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어 한국은 재무회계기준의 국제화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인 회계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현재 한국의 기업회계기준 설정과정이 민간주도형 중심으로 된다.

3) 교육 및 사회문화가치와 회계환경

한 나라의 회계기준의 설정 및 회계이론의 발전수준은 그 나라의 회계학과 실무계 인사들의 회계에 대한 지식 및 회계교육의 발전과 큰 관련이 있다.

중국은 뒤늦은 20세기 후반기인 80년대부터 회계교육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대학교의 교과과정에서 국제회계, 서방자본주의회계 등 교과과목을 개설하고 가르친다. 현재, 중국의 많은 유학생이 미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학생들이 박사학위취득 목적으로 공부하고 있고 세계 각 선진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수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들이 앞으로 중국의 회계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60년대부터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회계학을 전공하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아 귀국한 고학력자들이 회계교육과 회계이론 연구 및 재무회계기준설정기구에 근무하면서 회계이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회계의 전문직 또는 교육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재무회계기준의 제정과정에서 회계학계가 갖는 역할이 크고 미국 재무회계기준과 유사하게 발전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회계교육을 통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제3절 회계제도 환경

1) 중국회계기준에 대한 소개

(1) 중국회계기준의 발전과정

단계I: 80년대 초-80년대 말 탐색단계

20세기 80년대 초부터 80년대 말까지 또는 90년대 초기의 10년 동안은 중국회계기준의 탐색단계이다. 1978년 전의 회계개혁은 빈번하게 진행하였고 회계보고의 체계와 회계제도의 체계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1978년부터 중국공산당의 11차 인민대표대회 후 중국 경제개혁의 서막을 열었다. 외국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1985년에 『중외합자경영기업회계제도』(中外合資經營會計制度)를 정식으로 발표하고 실시하였다. 그리고, 「재정부」가 회계사사무소제도를 도입하고 조직하였다. 먼저 Beijing(北京)과 Guangzhou(廣州)에 회계사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이 때 회계사사무소의 주요 책임은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연도보고서를 감사하였다.

이와 동시에 대내경제를 위해서 기타 기업의 개혁에 대해 탐색단계에 들어갔다.

단계II: 90년대 초-90년대 말 초보 건설단계

90년대 초 중국의 경제개혁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들어갔다. 즉, 계획경제 또는 시장경제의 선택문제이다.

이 때 주석 鄧小平²⁾(Deng Xiaoping)은 "중국 미래 경제의 주도 방향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이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상징이 아니다. 사회주의도 시장경제를 보유할 수 있고 자본주의도 계획경제를 보유할 수 있다." 라고 중요한 연설을 하였다. 이 지침 하에 중국의 여러 가지 개혁(재정, 은행, 기업 등)을 시작하였다. 개혁의 결과는 "兩則兩制"을 나타냈다. "兩則"은 『기업회계기준』(企業會計準則)과 『기업재무통칙』(企業財務通則)이며 "兩制"는 13개 업종회계제도와 10개 업종재무제도를 말한다. 여기부터 자산, 부채, 소유주권익, 수익, 비용 등 개념을 인식하며 자산부채표, 이윤표, 자본변동표 등 재무보고체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회계개혁은 "전면 개편 단계" 이다.

단계III: 90년대 말-신세기 초 발전단계

2) 중국 개혁개방의 선구자.

90년대 말부터 21 세기 초까지 “兩則兩制” 기초 위에 「재정부」가 17³⁾ 개 『기업 회계기준』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기업회계제도』를 제정하며 2001년에 상장회사부터 집행하고 2002년부터 외국투자기업도 집행하였다.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투자회사, 기금회사를 규정하기 위해서 『금융업종회계제도』를 제정하고 소기업에 대해서는 『소기업회계제도』를 제정하였다. 여기까지 중국의 회계제도체계는 13개 업종회계제도에서 『기업회계제도』, 『금융업종회계제도』, 『소기업회계제도』로 바뀌었다.

단계IV: 2007년 이후-완성단계

단계IV는 단계III의 계속이다. 이 단계에서 회계기준을 더 강조하였다. 그런데. 아직도 회계기준과 회계제도가 병존한 상태이다.

중국경제의 진일보한 국내외 발전을 위해서 2006년도 「재정부」가 『기업회계기준 2006』을 공포하였다. 이번 개혁은 중국의 회계사상 지금까지 범위가 가장 넓고, 그리고 그 정도도 가장 높은 개혁이다. 전에 보다 신 기업회계기준체계는 기업의 순익상황 관심뿐만 아니라 자산부채표에서 기업의 재무상황을 더 강조한다. 기업의 경영효과보다 기업의 경영방법과 자산의 운영효율을 더 강조한다. 자산의 질량 및 잠재 가능한 위험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재무제표가 역사에 관한 숫자만 아님을 나타낸다. 이것은 회계이념의 변화이다.

(2) 중국회계기준의 제정기관과 자본시장 감독기관

① 제정기관

현재 중국의 회계기준제정기관은 국가기관인 「재정부 (財政部) (Ministry of Financ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며, 회계기준의 제정과 관련한 실무를 관장하는 내부 부서는 「회계사(會計司)」이다.

「재정부」는 회계기준의 제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체계적인 연구에 근거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재정부회계기준위원회(財政部會計準則委員會)(China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이하 CASC)」를 자문기구로 두고 있다. CASC는 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회계학계, 기업계, 회계직업단체 및 증권산업계, 정부 등 유명한 위원 2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 이다. 「재정부회계기준위원회」는 중국 회

3) 17개는 1 개 기본기준과 16개 구체적인 기준이다.

회계기준제정과 관련된 자문기구로서 주로 회계기준의 총체적인 방안, 주제별 구조, 입안, 기준의 작성, 내지는 공표시행들과 관련하여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자문을 제공하며 회계기준이 공표된 후 시행 상황에 관한 정보교류 등의 역할을 한다.

한국의 「회계기준위원회(KASB)」가 연구뿐 아니라 회계기준 제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CASC는 연구와 자문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② 자본시장 감독기관

중국의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中國證券監督管理委員會)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CSRC)」이며, 이 기구는 「재정부」와는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국가최고기관인 「국무원」의 직속기구이다. CSRC의 주요 보직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5명, 위원장보조 3명이 있으며, 조직은 1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CSRC는 시장 감독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규정의 입안, 그리고 증권의 발행과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을 책임진다. 또 CSRC는 증권회사, 기금관리회사, 선물청산회사, 투자자문회사들도 감독하며, 회계법인, 법무법인, 자산평가회사의 설립허가권을 행사한다.

(3) 중국회계학회 (中國會計學會)

중국회계학회(China Accounting Society)는 「재정부」의 주도 아래 1980년 창립되어 운영되는 관제적 조직이다. 중국회계학회는 전국회계영역의 각 전공조직 및 개인이 자원하여 결성된 학술성, 전문성을 겸비한 비영리 사회조직으로서, 정부와 학계 및 업계 전문 인사를 이어주는 교량적인 역할을 한다.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회계학회는 정부의 회계개혁의 정책을 홍보하는 동시에 여러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회계학회는 「재정부」의 지도하에서 전국의 회계연구 인원을 조직하고 지원하여 회계지식을 보급하고 전파하며 회계에 대한 사회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적극적으로 회계이론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회계개혁을 위하여 이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중국회계학회는 중국의 회계개혁과정에 반영되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을 「재정부」의 지원 하에 중국회계학회 산하 전공위원회에서 전문 인력을 동원하여 전문주제의 연구를 행하며 회계기준의 재정 관련 의견과 건의서를 제출한다.

(4) 중국공인회계사협회 (中國註冊會計師協會)

중국공인회계사협회(The Chinese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CICPA)는 1988.11월에 『공인회계사법』과 『사회단체등록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단체법인이며, 중국공인회계사 영역의 자율 관리조직이다. 중국공인회계사협회의 최고 권력기구는 전국회원대표대회이다. 현재, 중국공인회계사협회는 단체회원 5000개, 개인회원⁴⁾ 130,000⁵⁾개가 있다. 그 직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회회원을 감사하고 지방공인회계사협회를 지도한다.

둘째, 전국동일공인회계사시험⁶⁾ 및 기타 업무국제교류활동을 조직한다.

셋째, 공인회계사에 관한 감사규칙을 제정한다.

2) 한국회계기준에 대한 소개

(1) 한국회계기준의 발전과정

한국의 회계기준은 회계기준의 정립기, 회계기준의 발전기로 나누어 그 발전과정을 검토할 수 있다.

회계기준 정립기에서는 1958년 한국 최초의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의 제정, 1974년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과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의 등장, 1976년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규정 등 규칙의 개정과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회계기준의 발전기에서는 국제회계의 통일화로 인한 국제회계기준의 영향으로 제원칙과 법률을 일원화한 기업회계의 개정을 통한 통합 회계기준의 제정과, 1984년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1985년 개정기업회계기준, 1990년 개정기업회계기준, 1994년도, 1996년도, 1998년도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1999년도에 재무회계개념체계가 발표되어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서 논리적 구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금융 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을 대신할 기업회계기준서가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2) 한국회계기준의 제정기관과 자본시장 감독기관

① 제정기관

4) 현재 중국의 공인회계사시험을 통과한 인원수는 140,000 명쯤이다.

5) <http://www.cicpa.org.cn/> 참조.

6) 시험과목은 회계, 감사, 재무원가관리, 경제법, 세법 다섯 가지이다. 매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60점 이상을 얻으면 그 과목을 합격한 것으로 한다. 과목합격자 인정제도가 있으며, 과목합격자는 그 이후의 시험에 연속4차례 걸쳐서 유효한다. 전국의 통일적인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사업무에 2년 동안의 실무경험을 가진 후에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인회계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위탁을 받은 한국회계기준원(Korea Accounting Institute)이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KASB)를 설치하고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혁은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한국회계기준원의 연혁

1997. 06	회계기준제정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제안 (금융개혁위원회)
1998. 05	독립적인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창설 제안 (회계제도특별위원회)
10	정부와 IBRD 사이에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 설립 합의
1999. 08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립허가 및 법원 등기
2000. 01	회계처리기준제정 민간법인에 위탁근거 신설 (외감법 제13조)
07	회계기준제정업무 수탁
2001. 12	국제회계기준소위원회 발족
2002. 07	질의회신위원회 설치
2006. 03	한국회계기준원으로 명칭 변경

KASB는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상임위원과 5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 주요 임무는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의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여 독립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개정, 해석하고 이와 관련된 중요 연구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② 자본시장 감독기관

한국의 자본시장 감독기관은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기존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1.2에 설립되었다. 그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감독, 금융회사 검사, 자본시장 감독, 회계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국제협력 및 교류, 조사연구 및 통계편제 등이다.

(3)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학회(Korea Accounting Association, KAA)는 1973년에 한국 회계학의 연구 및 교육의 발전과 회계학도의 건전한 연구 활동 및 회원의 일반적 이익과 상호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발족하여 현재까지 연구 및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학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학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부회장 10명, 상임이사 30명 이내, 이사 60명 이내, 감사 2명 이내로 구성되었다. 학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회원의 연구 활동 지원 및 조성 ②회원의 연구결과의 발표 및 토론회의 개최 ③학술지 및 연구 간행물의 발간 ④회계학 연구 자료의 교환 및 보급 ⑤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공동사업 및 연결 ⑥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하는 것이다.

(4)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KICPA)가 설립된 지도 50년이 지났다. 그 동안 공인회계사들은 기업회계의 공정한 심판자로서 또한 세제와 세정의 협력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 그러므로써 한국의 경제적 신화를 이룩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기여하였다. 현재 한국의 공인회계사인수는 12,200⁷⁾명쯤이다. KICPA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윤리강령 준수 ②회계감사기준 제정 ③전문직능력 개발 ④회계감사품질 ⑤연구, 학술활동, 출판 ⑥정부위탁업무수행 ⑦국제활동 및 교류 EBRL (Exchang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개발·보급·확산사업 등이다.

7) <http://www.kicpa.or.kr>

제 III 장 중·한 회계기준에 대한 소개 및 비교

제1절 기본적인 회계기준의 비교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며 경제실체의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여 그 실체의 이해관계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과정 또는 기능이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회체계가 다르고 경제체계가 다르므로 인하여 회계처리방법도 많은 차이점이 있다. 아래 중요한 회계처리방법을 중심으로 비교, 정리하여 중·한 회계방법의 차이점을 인식하려고 한다.

1) 회계기준내용의 비교

중국회계기준의 내용⁸⁾은 다음 11가지 있다. 즉, ①총칙 ②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③자산 ④부채 ⑤소유주권익 ⑥수익 ⑦비용 ⑧이윤 ⑨회계측정 ⑩재무회계보고 ⑪부칙

한국에서 재무회계개념체계를 의하면 다음 7가지내용⁹⁾을 포함한다. 즉, ①서론 ②재무보고의 목적 ③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④재무제표 ⑤재무제표의 기본요소 ⑥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 ⑦재무제표의 기본요소의 측정이다.

위의 분류에 따라 중국의 기업회계기준은 재무제표의 각 요소를 각각 규정한다. 한국재무회계개념체계가 재무제표 전체로 규정하고 각 장에서 재무제표의 각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 양국의 회계기준의 구조와 진술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비슷하다.

2) 회계총칙의 비교

여기서 회계총칙의 비교는 회계기준의 제정목적, 회계의 목적,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회계의 일반원칙, 회계연도, 재무제표 요소 등을 말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8) 중국 『기업회계기준2006-기본기준』

9) 한국 『재무회계개념체계』 2003.12.4

<표 3-1> 회계총칙의 비교

구 분	중 국	한 국
회계기준의 제정목적	기업회계의 인식, 측정, 보고를 규범하고 회계정보 품질을 보증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사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한다.
회계의 목적	국가의 거시적 통제요구 부응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이해 내부 경영관리정보제공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현금흐름정보 제공 주주에 대한 수탁책임 정보제공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회계실체, 지속경영, 회계기간, 화폐 측정	기업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
회계의 일반원칙	진실성, 완전성, 상관성, 이해가능성, 비교가능성, 실질우선의 원칙, 중요성, 신중성, 적시성	신뢰성, 이해가능성, 충분성, 계속성, 중요성, 보수주의, 실질우선, 목적적합성
회계연도	1.1~12.31	1년
재무제표 요소	자산, 부채, 소유주권익, 수입, 비용, 이윤	자산, 부채, 자본, 자본조정, 수익, 비용, 이득, 손실

(1) 회계기준의 제정목적 및 회계의 목적

회계의 목적을 보면, 기업회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누어진다. 재무회계는 외부보고 목적의 회계로서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 신용결정, 기타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재무회계는 주주가 경영자에게 위임한 수탁책임에 따라 경영자가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결과를 보고하는 회계이다. 반면에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의 회계로서 기업 내부의 경영자가 보고 대상이다. 즉, 관리회계는 경영자가 관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경영의 계획과 통제를 위한 정보제공이 중요시 된다.

중국과 한국은 회계의 목적 및 회계기준의 제정 목적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은 큰 차이가 없으며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상당히 반영하였다.

(2)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한국의 재무제표의 기본가정을 중국 재무제표의 기본가정과 비교하면 중국회계 기준에는 화폐측정을 두고 있다.

(3) 회계연도

회계연도의 비교에서 중국은 1.1~12.31이며 한국은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1년이다.

(4) 재무제표 요소

중국 회계기준의 일반원칙에서의 진실성의 원칙과 한국 회계기준에 있어 신뢰성의 원칙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단지 한국 회계기준은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일반원칙을 기술하고 있고 중국 회계기준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발전의 수요에 적용하려는 목적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제2절 자산 (Asset)의 비교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자산에 대한 분류방법상 중국과 한국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표 3-2>과 같다.

<표 3-2> 자산분류 비교표

중 국	유동자산	화폐자금, 거래성금융자산, 매출채권, 받을어음, 미수금, 선급금, 채고자산 등.	
	비유동자산	매각성금융자산, 장기주식투자, 투자부동산, 고정자산, 건설중인자산, 무형자산, 생물자산 ¹⁰ , 영업권, 장기선급비용, 석유가스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등.	
한 국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채고채권, 채고자산, 선급비용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투자부동산, 장기투자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기대여금 등
		유형자산	토지, 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등
		무형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재발비 등
	기타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등	

(1) 분류방법

자산(부채)을 분류,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유동항목

10) 생물자산이란 생명이 있는 동물과 식물을 말한다.

과 비유동항목으로 분류. 표시하는 방법이다.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1년기준과 정상영업순환주기기준이 있는데, 1년 기준은 대차대조표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된다고 상환하여야 하는 항목은 유동항목으로, 그렇지 않은 항목은 비유동항목으로 하는 분류기준이다. 이는 양국의 회계기준규정에서 차이가 없다.

중국 회계기준에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한국 회계기준에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을 포함한다.

특별히, 중국 회계기준서에서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아니며 무형자산과는 구분되는 회계항목이다. 한국 회계기준에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속한다. 양국의 영업권에 관한 처리에 대해서는 3장 2절에서 자세히 기술되어진다.

(2) 자산의 측정(평가)

자산의 측정(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중국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로 측정하고 재취득원가(replacement cost),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zable value), 현재가치 (present value), 공정가치(fair value)¹¹⁾로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회계요소의 금액을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다.

한국은 재무회계개념체계에 의할 경우 자산(부채)의 측정에 사용될 수 있는 측정속성으로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기업특유가치, 상각후가액, 순실현가능가치는 제시한다.

1) 재고자산 (Inventory)의 회계처리 비교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거나 또는 판매할 자산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소모될 자산" 이다. 재고자산의 회계처리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업활동을 기록하는 것이므로 다른 자산의 회계처리와는 다르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상의 문제는 ①재고자산의 취득원가결정 ②재고자산의 범위/종류 ③재고자산의 원가배분 ④재고자산의 평가 4가지이다. 이상의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재고자산의 기본적인 비교는 <표 3-3>에 있다.

11) 중국 신 기업회계기준 2006 중 공정가치의 적용범위: 금융상품, 투자부동산, 생물자산, 비동일인 지배의 회사 연결, 채무조정하고 비화폐성 거래 등.

<표 3-3> 재고자산 비교표

구 분		중 국	한 국
측정방법		취득원가=구입원가+가공원가+기타원가	취득원가=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매입부대비용
범위/종류		원재료,제품,반제품,상품,재공품,포장물,저가소모품, 수탁판매상품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저장품,위탁판매,기타
원가배분	수량결정 방법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
	원가흐름의 가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개별법	개별원가법,가중평균법,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
기말평가		저가법을 적용한다. 평가감액의 회복이 가능하다.	저가법을 적용한다. 평가감액의 회복이 가능하다.

(1) 측정방법과 범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와 범위를 보면, 중국과 한국은 회계기준에서 큰 차이가 없다.

(2) 원가배분

재고자산의 수불이 있었을 때 수량이 변동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는 데 이 때 수량의 변동을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중국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 2가지 있다. 한국에서는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 3가지 있다.

재고자산의 원가흐름의 가정에 보면, 중국의 신 기업회계기준서 2006중 "이동평균법", "후입선출법"은 삭제되었다.

(3) 기말평가

재고자산의 기말평가를 할 때, 중국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재고자산은 저가법(成本與可變現淨值孰低)¹²⁾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감액누계액은 종목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경우 각 재고자산 항목의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를 비교하여 그 순실현가능가치가 적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감액손실누계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단 수량이 비교적 많고 단가가 비교적 적은 재고자산은 재고자산 종류별로 감액손실누계액을 설정할 수 있다. 기업은 매 회계기간말 마다 순실현가능가치를 평가하여 순실현가능가치가 회복되는 경우에는 감

12) 중국기업회계기준 제1호 문단 15호

액손실누계액의 범위 내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 이 때는 감액손실누계액에서 차감시킨다.

재고자산의 감액손실누계액 및 회복을 설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평가차손의 인식:

(차)관리비용(管理費用)×× (대)재고자산질가준비 (存貨跌價準備¹³⁾)××

평가차손의 회복:

(차)재고자산질가준비 (存貨跌價準備)×× (대)관리비용(管理費用)××

한국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종목별기준으로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고자산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조별기준으로도 저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총계기준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 평가차손을 매출원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차손만큼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저가법의 적용에 따라 평가차손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실현가능가치가 장부가액 보다 상승한 경우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가치로 환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저가법 적용시의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차손의 인식:

(차)매출원가×× (대)재고자산평가충당금××

평가차손의 회복:

(차)재고자산평가충당금×× (대)매출원가××

2)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의 회계처리 비교

산업사회가 지식사회로 발전하면서 지식자산의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과거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에서는 토지와 자본 등 유형자산이 주요한 부의 원천이었지만 이제는 기술, 특허 등과 같은 지식자산의 기업경쟁력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고 있으며 중요한 부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기업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문제로는 ①취득원가의 결정 ②무형자산의 범위 ③정상적 영업환경하에서의 자산상각문제 등이 있는데, 이는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문제와 거의 유사하다. 단지,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형자산 자체의 특성 때문에 훨씬 복잡할 뿐이다 ④무형자산의 평가 등이다. 이들 문제에 관련된 비교는 <표 3-4>에 나타나고 있다.

13) 재고자산의 감액손실을 처리한다.

<표 3-4> 무형자산 비교표

구 분	중 국	한 국
측 정 방 법	취득원가	취득원가
범 위	특허권, 상표권 (brand value), 토지사용권, 비특허기술, 저작권 등.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창업비, 개발비, 기타무형자산
상 각 기 간	-사용수명 유한한 무형자산은 사용수명 내 상각 -사용수명을 예측하지 못한 무형자산은 상각할 수 없다(신규).	상각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 각 법	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법 ¹⁴⁾ 이어야 한다. 다른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해야 한다.	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다른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해야 한다.
감액손실	회복이 불가능	회복이 가능

(1) 정의

중국 『회계기준제6호 - 무형자산』에서 규정된 무형자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자산¹⁵⁾이다.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2) 측정방법

측정방법에서 중국과 한국은 모두 무형자산 취득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양국간에 차이가 없다.

(3) 범위

무형자산의 범위를 보면 중국의 기업회계기준에서 기업연결 시 발생된 영업권은

14) 이러한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15) 비화폐성자산이란 기간이 경과하거나 화폐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화폐평가액이 변동하는 항목으로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확정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현금, 예금, 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을 비화폐성자산으로 이해하면 된다.

무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토지사용권 중 임대한 토지사용권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내부 연구 개발프로젝트의 경우, 연구단계의 지출은 당기손익으로 개발단계의 지출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자본화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도록 한다. 한국 기업회계기준에서 영업권과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4) 상각과 감액손실

상각기간을 보면, 중국에서 무형자산의 상각은 무형자산의 사용이 가능한 때부터 기업이 무형자산을 이용하지 않을 때 까지이고 최장의 상각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에 없고 기업이 무형자산을 취득할 때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야 한다. 단 재무제표의 주석에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공시하여야 한다. 기말에 기업의 무형자산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즉,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¹⁶⁾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차액이 감액손실누계액정을 설정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감액손실로 처리한다. 그리고, 무형자산 감액 후에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할 수 없다¹⁷⁾.

한국에서 상각에 관한 내용연수가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은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을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각은 자산의 사용이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무형자산의 감액손실에 보면, 감액한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 장부가액의 상각 후 잔액(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3) 영업권 (Goodwill)의 회계처리 비교

식별이 불가능한 영업권은 가장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자산으로, 영업권 및 영업권 회계에 관한 논쟁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영업권과 관련된 회계처리문제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①영업권과 무형자산의 관계 ②영업권의 상각 ③영업권의 평가 ④부의 영업권의 회계처리

중국과 한국의 영업권에 관련된 이상 문제의 비교를 다음 <표 3-5>에 요약한다.

16) 순실현가능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

17) 중국기업회계기준 제8호 문단17.

<표 3-5> 영업권의 비교표

구 분	중 국	한 국
무형자산에 소속	×	○
영업권 상각	비상각(감액)	정액법으로 상각
감액손실	회복 불가능	회복 불가능
부의 영업권(Bad will)	즉시 이익 인식	일정기간에 걸쳐 이익 환입

(1) 정의

중국 『기업회계기준제20호-기업결합』에서 결합회사는 결합원가와 결합 시 취득한 인식가능 순자산 공정가치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한국 기업회계기준에서 영업권이란 우수한 경영진, 뛰어난 판매조직, 양호한 신용, 원만한 노사관계, 기업의 좋은 이미지 등 동종의 타 기업에 비하여 특별히 유리한 사항들을 집합한 무형자산의 자원을 말한다. 영업권의 정의를 보면, 중국 기업회계기준에서 영업권은 기업결합시만 발생할 수 있다. 즉, 기업이 스스로 영업권을 계상하는 경우에 발생한 영업권-자가창설영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자기창설영업권은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다. 중국의 회계기준에 의하면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한국의 회계기준에서 영업권도 매입영업권만을 인정하고 자가창설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 기업회계기준에서 영업권의 정의에 의하면,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2) 상각

영업권의 상각을 보면, 중국의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영업권은 비상각으로 처리한다¹⁸⁾.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은 영업권을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권의 감액손실을 보면, 중국 기업회계기준은 매 회계기말에 기업이 영업권에 대한 감액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한다. 일단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차액이 감액손실로 처리하지만, 감액 후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할 수 없다¹⁹⁾. 한국 기업회계기

18) 중국 기업회계기준2006 제 20호 문단 13.

19) 중국 기업회계기준2006 제 8호 문단 17.

준에서 영업권감액손실에 관한 규정과 중국의 규정은 비슷하다. 영업권의 감액손실 회복 불가능 이유는 동초과액을 자가창설영업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감액한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된 경우 그 회복된 금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면 기업이 스스로 영업권을 계상하는 결과가 되므로 감액한 영업권은 추후에 회복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3) 부의 영업권

부의 영업권의 회계처리에서 중국 『기업회계기준제20호-기업결합』 문단 13에 의하면 결합회사는 결합원가가 결합 시 취득한 피결합회사의 인식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당기손익에 산입한다. 즉, 부의 영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에서는 부의 영업권을 무형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발생원인에 따라 구분하여 일정회계기간에 걸쳐 이익 환입의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투자지분증권-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계처리 비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란 피투자회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서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대한 영향력’이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표 3-6>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비교표

구 분	중 국	한 국
취득시 평가	취득원가	취득원가
투자차액의 정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원가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액 × 투자지분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원가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액 × 투자지분율
투자차액의 처리	취득원가 > 순자산 공정가액에 대한 지분율상당액: 조정하지 않도록 한다. (상각하지 않는다.)	영업권으로 보아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처리방법에 따라 상각한다.
	취득원가 < 순자산 공정가액에 대한 지분율상당액: 당기순이익에 반영한다.	부의 영업권으로 보아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처리방법에 따라 환입한다.
감액손실	감액손실환입 불가능	감액손실환입 가능

(1) 취득시 평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 중국과 한국은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2) 투자차액의 정의

투자차액을 보면, 중국 『기업회계기준 제2호-장기주식투자』에서 장기주식투자차액이란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취득원가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공정가치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의 차액을 말한다. 한국 투자차액의 정의는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투자회사가 취득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취득대가의 차이금액이다. 정의를 보면, 양국은 차이가 없다.

(3) 투자차액의 처리

투자차액의 회계처리를 보면, 중국의 규정은 초기투자원가(취득원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공정가액에 대한 지분비율상당액보다 큰 경우 장기지분투자 초기투자원가를 조정하지 않도록 하며 작은 경우에는 당기순익에 반영한다²⁰⁾. 한국에서 이에 관한 규정은 투자차액은 영업권 등으로 보아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금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부채에 대한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처리방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한다²¹⁾.

(4) 감액손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감액손실의 인식에 보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단, 중국의 규정은 감액손실 환입이 불가능하고 한국은 감액손실 환입이 가능하다.

아래 사례로 양국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계처리 차이를 비교한다.

사례1.

A회사가 20X1년 초에 B회사 주식의 60%를 취득하였는데, 동일 B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500이고 순자산 공정가액이 ₩600(토지 ₩100만큼 과소평가 되었음)인 경우 B회사 주식의 취득원가가 각각 ₩390과 ₩330이라면 B회사 주식의 취득원

20) 중국 2006 『기업회계기준제2호-장기주식투자』 문단9.

21) 한국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 14.

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토지와 영업권은 5년에 걸쳐 상각한다.

[중국의 회계처리]:

B회사 주식의 취득원가가 ₩ 390인 경우

주식취득시:

차)지분법적용투자주식	390 ²²⁾	대)현금	390
-------------	--------------------	------	-----

투자차액상각시: 회계처리 없음.

B회사 주식의 취득원가가 ₩ 330인 경우

주식취득시:

차)지분법적용투자주식	360 ²³⁾	대)현금	330
		투자수익	30

투자차액상각시: 회계처리 없음.

[한국의 회계처리]:

B회사 주식의 취득원가가 ₩ 390인 경우

주식취득시:

차)지분법적용투자주식	390	대)현금	390
-------------	-----	------	-----

투자차액상각시:

차)지분법이익(토지상각)	12 ²⁴⁾	대)지분법적용투자주식	12
차)지분법이익(영업권상각)	6 ²⁵⁾	대)지분법적용투자주식	6

B회사 주식의 취득원가가 ₩ 330인 경우

주식취득시:

차)지분법적용투자주식	330	대)현금	330
-------------	-----	------	-----

22) 취득원가(390)가 순자산공정가액에 대한 지분율상당액(600×60%=360)보다 큰 경우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조정하지 않도록 한다.

23) 취득원가(330)가 순자산공정가액에 대한 지분율상당액(600×60%=360)보다 작은 경우 공정가치로 기록하고 차액은 당기순익에 반영한다.

24) (100 X 60%)/5=12

25) (390-600 X 60%)/5=6

투자차액상각시:

차)지분법이익(토지상각)	12	대)지분법적용투자주식	12
차)지분법적용투자주식(부의영업권상각)	6	대)지분법이익	6

제3절 부채 (Liability)의 비교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의무란 일정한 방법으로 실행하거나 수행할 책무 또는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는 계약이나 법령에 의해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의무와 상관습이나 관행 또는 거래상대방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가 있다. 양국의 부채의 분류를 <표 3-7>에서 제시한다.

<표 3-7> 부채분류의 비교표

중 국	유동부채	단기차입금,거래성금융부채,외상매입금,지급어음,미지급금,기타유동부채 등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장기외상매입금,예측부채,미지급회사사채,이연법인세부채,기타비유동부채 등	
한 국	유동부채	단기차입금,매입채무,미지급법인세,미지급비용 등	
	비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장기차입금 등
		장기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등
	기타비유동채	임대보증금,이연법인세부채,장기매입채무,장기미지급금 등	

(1) 분류

중국 회계기준에서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유동부채는 1년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1회계연도에 상환하는 채무를 말한다. 각종 유동부채는 실제 발생한 금액에 의거 기장하며 부채가 이미 발생하였고 금액을 미리 추정 계산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정 계산하고 실제 금액이 확정된 후 조정한다. 유동부채의 잔액은 재무제표에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유동부채외의 기타 부채항목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비유동부채의 잔액은 재무제표에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한국 회계기준에서 부채는 1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비유동부채는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를 포함한다.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①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②대차대조표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은 대차대조표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 외의 다른 부채항목이다.

(2) 평가

부채의 평가는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부채의 회계처리부분에서 중국과 한국은 차이가 나타난다. 중국은 지급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부채평가의 기본개념을 화폐의 시간가치를 인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이것은 이자의 개념이 덜 발달한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제4절 자본 (Capital)의 비교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을 말한다. 중국과 한국은 자본의 구성항목을 <표 3-8>에서 제시한다.

<표 3-8> 자본구성의 비교표

중 국	한 국
실수자본/자본금 (實收資本) / (股本)	자본금
자본잉여금 (資本公積)	자본잉여금
잉여공적금 (盈餘公積)	자본조정 누적기타포괄손익
미분배이익 (未分配利潤)	이익잉여금

1) 중국 자본 구성 항목의 소개

중국에서 자본은 소유주권익(所有者權益)이라고도 부른다. 자본/소유주권익은 기업의 자산에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는 잉여 권익을 말한다. 자본은 실수자본/자본금, 자본잉여금, 잉여공적금, 미분배이익으로 분류한다.

실수자본(實收資本)/자본금(股本)이란 투자자가 실제로 기업에 투자한 금액을 말한다. 투자자가 기업에 투자하는 자본은 일반적으로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자본금을 표시하는 계정이 두 개 있는데 첫째는 실수자본(實收資本)이고 둘째는 자본금(股本)이다. 주식회사에서는 자본금(股本)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고 주식회사 이외의 기타 기업은 실수자본(實收資本)이라는 계정을 사용한다. 자본금의 증감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자본금의 증가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자본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 이 때의 회계처리는 차변 자본잉여금, 대변 자본금으로 처리한다. 둘째, 잉여공적금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 이 때의 회계처리는 차변 잉여공적금, 대변 자본금으로 처리한다. 셋째, 소유자가 새로운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이 때의 회계처리는 차변 현금, 원재료 등, 대변 자본금으로 처리한다.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실질적 감자는 실제로 기업의 자산이 기업외부로 유출되면서 자본금의 감소가 일어나는 감자를 말한다. 이 때의 회계처리는 차변 자본금, 대변 현금 등으로 처리한다. 둘째, 형식적 감자는 거액의 결손이 발생하여 그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상계하는 방법과 같이 기업의 자산이 기업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감자를 말한다. 이 때의 회계처리는 차변 미분배이익 대변 자본금으로 처리한다.

자본잉여금(資本公積)은 투자자 또는 기타인이 투자한 것으로서 소유권은 투자자

에게 속하지만 자본금을 구성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자본잉여금은 형성된 측면에서 보면 투자자가 투자한 자본금 중 법정자본을 초과한 부분 또는 기타인이 투자한 것 중에 자본금을 형성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기업이 실현한 순이익으로 부터 증가된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투자자 또는 기타인으로 부터 투자된 자본에 속한다. 예를 들면, 주식발행초과금, 법정재산재평가증여, 외화환산차익,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등이다.

잉여공적금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이윤에서 분류한 부분 공적금이다. 중국에서 잉여공적금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표 3-9>와 같다.

<표 3-9> 중국의 잉여공적금 구성표

잉여공적금 (盈餘公積)	일반공적금 (一般公積金)	법정공적금 (法定公積金): 세후이윤×10%
		임의공적금 (任意公積金): 주주총회 결정
	법정공익금 (法定公益金): 세후이윤×5%~10%	

법정공적금(法定公積金)은 세후 이윤의 10%를 계산한다. 이는 한국의 이익준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세후 이윤의 10%씩 적립을 해서 만약 그 적립누계액이 자본금의 50%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정공익금(法定公益金)은 세후이윤의 5% 내지 10%의 비율로 적립한다.

임의공적금(任意公積金)이란 한국의 임의적립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사에서 특정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公益金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요건이 아니라 회사 임의로 특정한 용도를 목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적립할 수 있다.

잉여공적금(盈餘公積)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①이월결손금의 보전. 이 때의 회계처리는 차변 잉여공적금(盈餘公積)대변 이윤분배(利潤分配)로 처리한다.

②자본전입. 이 때의 회계처리는 차변 잉여공적금(盈餘公積)대변 자본잉여금(資本公積)으로 처리한다.

미분배이윤(未分配利潤)은 기업에서 이후 년도의 분배를 위하여 남긴 이윤 및 대분배이윤(待分配利潤)을 말한다. 미분배이윤은 내포된 의미 두 가지 있다.

첫째, 미분배이윤은 이후 년도 처리된 待분배이윤 이다.

둘째, 미분배이윤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이윤이다.

자본잉여금과 자본금의 구별은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투자한 것으로 법정자본이라고 불리며 등록자본원금은 불입방법과 금액 상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자본잉여금은 이에 반해서 특정한 항목에서 조달 되지만 자본금 처럼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본잉여금과 잉여공적금의 구별은 자본잉여금은 근본적으로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말하며, 잉여공적금은 손익의 증감에서 발생한 거래를 말한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잉여금이고 잉여공적금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다. 잉여공적금은 근본적으로 손익계산서를 거쳐서 증감이 기록된다.

2) 한국 자본 구성 항목의 소개

한국에서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을 말한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누적기타포괄손익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자본금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납입자본금을 의미하고,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자본이 증가된 것을 의미하며, 자본조정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들을 말한다. 그리고 누적기타포괄손익은 손익거래 중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의 잔액을 말한다.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납입자본을 나타내고,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창출활동에 의하여 획득된 이익 중 배당금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거나 납입자본으로 대체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부분이다. 이익잉여금은 주주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기본 재무제표 중의 하나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납입자본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자본조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미교부주식배당금, 투자주식평가손익 등이 있다.

제5절 수익 (Revenues), 비용 (Expenses) 및 이익 (Income)의 비교

1) 수익 · 비용의 비교

기업은 원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조직된 것이다. 이익의 원천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존재가치는 상실된다. 수익과 비용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경

영활동에서 나타나는 자원의 흐름으로서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은 원재료를 취득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에 이를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수익과 비용은 이러한 경영활동의 전 과정을 통하여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특정 회계기간별로 보고하기 위해서 경영활동과정 중 어느 시점과 원칙에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중국과 한국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함에 있어서 모두 발생주의 회계원칙과 수익-비용 대응원칙을 따른다.

(1) 수익

중국 『기업회계기준제14호-수익』 문단2에서 수익은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서 형성하고 기업의 자산을 증가시키고 소유자의 투입자본과 상관없는 경제이익의 총유입액을 말한다. 수익의 성질에 따라서 상품매출수익, 용역제공수익 및 자산양도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이 상품 매출수익의 인식은 다음의 5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 ①기업은 상품소유권상의 주된 위험과 보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②기업은 소유권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관리권과 통제권이 없어야 한다.
- ③수익의 금액이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④거래와 관련 있는 경제이익이 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어야 한다.
- ⑤관련된 발생한 비용이나 발생할 비용이 계량화 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수익이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이다. 수익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금유입액을 나타내며, 경영활동의 종류와 당해 수익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 매출액,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임대수익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수익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에서 인식한다.

- ①수익은 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가능 시점에서 인식한다.
- ②수익은 그 가득과정이 완료되어야 인식된다.

(2) 비용

중국에서 비용은 기업이 상품을 매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희생 또는 경제적 유출을 말한다. 비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①비용은 기업이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유출이지 우연히 발생된

경제적 이익의 유출은 아니다. 우연히 발생된 경제적 이익의 유출은 손실에 해당된다. 중국에서는 손익계산서 상에 영업외지출이라는 과목으로 손실을 처리한다.

②비용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또는 양자의 결합으로 표시한다.

③비용은 소유자 지분을 감소시킨다.

비용은 광의의 비용과 협의의 비용이 있다. 광의의 비용이란 기업의 경영 중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지출, 예를 들면 경영비용, 투자손실, 영업외지출 및 소득세비용 등이다. 협의의 비용이란 기업의 상품판매, 노무제공 등 일상 경영 활동 중에서 발생한 각종 지출, 즉 경영비용을 말한다.

비용과 원가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원가는 아직 용역잠재력이 소멸되지 않은 자산을 말하고, 비용은 용역잠재력이 소멸된 것을 말한다. 비용은 크게 판매비용, 재무비용, 영업비용으로 나누어진다.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당기에 발생하는 비용은 실제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반대로 당기에 발생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그 돈을 현재 지급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비용이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이다. 경제적 효익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비용으로 인식한다.

①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한다.

②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③자산으로 부터의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 성격의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 인식한다.

2) 이익의 산출과정 비교

중국과 한국의 이익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에서의 이익 산출과정:

영업이익=영업수익-영업원가-영업세금 및 부가금-판매비용-관리비용-재무비용+
공정가치변동수익+투자수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영업이익+영업외수익-외업외지출

당기순이익=법인세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

(2) 한국에서의 이익 산출과정:

매출총이익=매출-매출원가

영업이익=매출총이익-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영업이익+영업외이익-영업외비용

당기순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

제6절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의 비교

회계를 기업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사건을 측정, 기록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마지막 단계가 곧 재무보고이다. 오늘날 기업은 기업의 내·외부에 많은 이해관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이해관계자에게 기업내부에서 일어난 각종 경제적 사건을 보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는 기업내부에 일어나는 각종 상황을 알고 싶어 하지만,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정보제공 수단이 곧 재무제표이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회계순환과정의 최종산물이다.

재무제표는 기업실체의 자원과 그 자원에 대한 청구권 및 이들의 변동을 일으키는 거래나 사건 또는 환경의 영향을 인식하여 측정된 결과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재무제표는 기업실체의 외부 정보이용자에 기업실체에 관한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재무보고 수단이다. 아래 중·한양국의 재무제표의 종류 및 작성을 살펴보고 비교한다.

1) 양국의 재무제표 종류의 비교

양국의 재무제표의 종류는 <표 3-10>에서 제시한다.

<표 3-10> 재무제표종류의 비교

중 국	한 국
자산부채표 ²⁶⁾ (資產負債表)	대차대조표
이윤표(利潤表) 및 이윤분배표(利潤分配表)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現金流量表)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所有者權益變動表)	자본변동표
주석(附注)	주석

중국 『기업회계기준제30호-재무제표』 문단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에는 자산부채표, 이윤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다. 한국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다.

중·한 재무제표의 종류를 보면 차이가 거의 없다.

2)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의 비교

대차대조표는 재무제표 중에서 특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재무제표이다. 그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자원 및 그 분포, 자원의 조달 및 운영성과를 알 수 있다.

둘째,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재산과 부채의 수량관계 및 그 유동성을 알 수 있으며 기업의 장단기 부채상환능력 및 재무탄력성을 알 수 있다.

셋째, 서로 다른 시기에 동일항목을 비교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상황과 현재의 기업의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의 재무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1) 정의

중국 기업회계기준에서 자산부채표는 어떤 특정일에 기업의 재무상황을 반영하는 장표이고, 자산부채표의 항목은 자산, 부채, 소유주권익의 유형별로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산부채표는 회계기말 각 관련 회계과목의

26) 중국의 재무제표 중의 자산부채표와 한국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는 동일한의미를 갖다

잔액을 근거로 산출하며 자산을 유동성에 따라 배열함으로써 기업의 현금조달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부채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함으로써 기업의 부채 상황과 상환능력을 직접 공시할 수 있다.

한국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은: ①구분표시기준 ②유동성배열기준 ③항목의 구분·통합표시 ④자산과 부채의 순액표시 4가지가 있다.

대차대조표의 정의를 보면, 중·한 양국의 차이가 거의 없다.

(2) 작성방식

자산부채표의 작성방식에는 장부식과 보고식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장부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산부채표는 양쪽으로 나누어서 좌측은 자산, 우측은 부채 및 소유주 권익을 표시한다. 자산부채표의 양식은 부록에 기재되어 있다. 중국의 자산부채표는 각 항목 모두 연초금액과 연말금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연초금액과 연말금액을 서로 비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산부채표는 비교식으로 작성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계정식과 보고식으로 작성하고 대차대조표 각 항목 모두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을 서로 비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차대조표도 비교식으로 작성된다고 볼 수 있다.

3)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의 비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첫째, 기업의 경영성과의 분배에 관한 중요 자료를 제공한다.

현대의 기업 내·외부에 많은 이해관계자 집단이 그 기업에 제공한 자본 또는 노무 등에 대하여 상대적인 분배를 바라고 있다. 손익계산서는 이러한 분배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이익에서 법규에서 규정하는 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영성과의 배분기초가 되는 것이다.

둘째, 경영자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현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외부 이해관계자가 성과평가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손익계산서이다.

셋째,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가능하게 한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미래 의사결정을 위하여 기업의 현금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현금흐름 중에서 영업활동과 관련한 현금흐름은 손익계산서항목에 적당한 조절을 하면 산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손익계산서는 곧 기업의 미래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 정의

중국에서 이윤표란 일정회계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이다. 이윤표에서는 수익에서 비용, 원가, 손실을 차감하여 산정되므로 이윤표에서는 이러한 각 수익, 비용, 손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배열하여 구성된 표이다.

한국기업회계기준에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과 수익창출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양국의 손익계산서에 대한 정의를 보면 큰 차이가 없다.

(2) 구성항목

중국은 이윤표에서 최소 다음 내용²⁷⁾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①영업수익(營業收入)
- ②영업원가(營業成本)
- ③영업세금(營業稅金)
- ④관리비용(管理費用)
- ⑤판매비용(銷售費用)
- ⑥재무비용(財務費用)
- ⑦투자수익(投資收益)
- ⑧공정가치변동손익(公允價值變動損益)
- ⑨자산감액손실(資產減值損失)
- ⑩비유동자산처분손익(非流動資產處置損益)
- ⑪법인세비용(所得稅費用)
- ⑫당기순이익(淨利潤)

27) 『기업회계기준30호-재무제표』 문단27

한국에서 손이익계산서의 기본구조²⁸⁾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①매출액
- ②매출원가
- ③매출총손익
- ④판매비와 관리비
- ⑤영업손익
- ⑥영업외손익
- ⑦영업외비용
- ⑧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 ⑨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⑩계속사업손익
- ⑪중단사업손익
- ⑫당기순이익
- ⑬주당손익

앞에 이익의 산출과정비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양국의 손익계산서 구성항목상의 차이 때문에 양국의 이익산출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3) 작성방식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윤표가 단일단계식과 다보식이 있다.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이윤표 양식에 다단계식(Multi-step)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기업회계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를 보고식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중국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윤분배표라 부른다. 이윤분배표는 기업이 실현한 순이익과 전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당기에 어떻게 분배되고 얼마가 미처분되었는지 등을 나타내는 표이다. 중국에서는 이윤분배표 중 최소 다음 다섯까지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①당기순이익(淨利潤)
- ②법정적립금적립액(提取法定盈餘公積)
- ③임의적립금적립액(提取任意盈餘公積)
- ④보통주배당금(應付普通股股利)
- ⑤미분배이윤(未分配利潤)

중국에서 이윤분배표가 단독으로 공시할 수 있고 이윤표에서 같이 공시도 된다.

28) 『기업회계기준서 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문단 60

한국에서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한 재무보고서이다. 이익잉여금처분계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이익잉여금처분액,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4) 현금흐름표 (Cash Flow Statement)의 비교

최근에는 투자자나 채권자 등의 회계정보이용자들은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투자자에게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채권자에게 원금의 상환 및 이자지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기업의 현금동원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다. 현금흐름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전체의 재무상황 및 그 변동의 원인을 나타낸다.

기업이 경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현금의 흐름을 통해서 실현된다.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경영, 투자,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재무상태의 변동내용까지도 표현함으로써 재무상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해하게 해준다.

둘째, 기업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현금흐름표를 활용함으로써 현금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며, 미래의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나 지급능력 예컨대 배당, 임금, 원재료 구입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1) 정의

중국에서 현금흐름표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실체에 대한 현금 및 현금등가물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현금흐름표에서는 순액으로 계산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나누어 보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금흐름표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실체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 세 가지 활동의 순현금흐름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2) 작성방식

중국에서 현금흐름표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계산될 수 있다.

한국에서 현금흐름표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하는 방법에는 간접법과 직접법이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5) 자본변동표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의 비교

자본변동표는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유용성이 있다.

첫째, 자본의 변동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둘째, 재무제표기간의 연결성을 제고시키며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증진시킨다.

셋째, 손익계산서를 경유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의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 정의

중국 『기업회계기준제 30호-재무제표 공시』 문단29에서 소유주권익변동표가 소유주권익의 각 구성항목의 당기 증감변동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는 자본변동표는 기업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양국의 자본변동표의 정의를 보면, 큰 차이가 없다.

(2) 구성항목 및 구조

중국에서 소유주권익변동표 최소 다음 항목이 단독으로 예시한다.

- ① 당기순이익(淨利潤)
- ② 직접 소유주권익에서 계상된 이득과 손실항목 및 총액(直接計入所有者權益的利得和損失項目及其總額)
- ③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로 인한 누적효과(會計政策變更和差錯更正的累積影響金額)
- ④ 소유주 투입자본 및 소유주한테 분배된 배당금 등(所有者投入資本和向所有者分配利潤等)
- ⑤ 적립금적립액(按照規定提取的盈餘公積)
- ⑥ 실수자본/자본금, 자본잉여금, 잉여공적금, 미분배이익의 기초, 기말 잔액 및 조절상황(實收資本(或股本)、資本公積、盈餘公積、未分配利潤的期初和期末餘額及其調節情況)

한국에서 자본변동표의 기본구조는 자본변동표에서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각 항목별로 기초 잔액, 변동사항, 기말잔액을 표시한다.

제7절 연결재무제표의 비교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본변동 및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오늘날의 기업은 시장 확보, 경쟁력 강화, 원재료의 안정적 조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기업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기업집단에 있어서 단독 재무제표로는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이용자는 피투자 종속회사의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재무제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외에 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 요구에 따라 등장한 것이 바로 연결재무제표이다. 연결재무제표의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의 전체적인 경영 상황을 반영하여 대외에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연결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이 내부의 지배종속관계를 이용하여 재무제표를 분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아래에 중·한 양국 연결재무제표의 목적, 종류, 접근방식, 작성을 비교한다.

1) 연결재무제표의 목적 비교

2006년 2월 중국은 신 기업회계기준을 공표하며 그 중 제33호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다.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공표된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이다.

중국은 연결재무회계기준²⁹⁾ 제2조 에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자회사로 구성되는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을 표시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한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의 문단1.에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2) 연결재무제표의 종류

중국기업회계기준제33호 문단3에서 연결재무제표의 종류로서 연결자산부채표, 연결이윤표, 연결소유주권익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및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문단6-연결재무제표의 종류에서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로 이루어지며 주석을 포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9) 중국 기업회계기준서 (2006) 제 33호 참조.

연결재무제표의 종류의 규정을 보면 중국과 한국은 동일하다. 연결재무제표의 종류 비교표를 제시하면 다음<표 3-11>과 같다.

<표 3-11> 연결재무제표의 종류 비교표

구 분	중 국	한 국
재무상황 표시	연결자산부채표	연결대차대조표
경영성과 표시	연결이윤표	연결손익계산서
현금흐름 표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주지분변동표시	연결소유자권익변동표	연결자본변동표
주석	주석사항	주석사항

자료출처: 최순희, 2006

3) 연결재무제표의 접근방식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절차, 작성방법 등이 달라 질 수 있다. 연결개념은 경제적 단위개념과 지배회사개념 및 지분비례개념 등이 있다.

지배회사개념(parent company theory)은 지배회사 주주에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연결재무제표의 기본 목적 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 개념에 의하면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투자계정 대신에 이에 대응되는 종속회사의 수익과 비용으로 바꾸어 표시한 지배회사 재무제표의 확장으로 간주된다. 지배회사개념에 따를 경우, 외부 주주지분의 성격은 분명하지 않다.

경제적 단위개념(economic entity theory)은 지배, 종속관계가 성립되면 법률적 실체들로 구성된 집단이 등장하게 되고, 이 집단이 동일한 경영자의 통제 하에서 단일실체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결과가 되므로 연결재무제표는 새로 등장한 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으로 한다.

지분비례 연결개념(proportionate consolidation theory)은 지배회사개념의 변형으로 비례적 연결이라고도 하며, 이 개념 하에서 종속회사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이득, 및 손실 중에서 지배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 연결재무제표에 보고된다. 이 개념 하에서도 지배회사 개념과 마찬가지로 보고실체는 지배회사이지만 연결재무제표에는 지배회사의 소유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순자산, 즉 지배회사의 소유자가

직접적인 이익수혜지분을 갖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이득 및 손실만 보고되므로 외부주주지분은 보고되지 않는다.

중국은 신 기업회계기준에서 연결의 조건으로 경제적 단위개념을 택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①외부주지분의 회계처리기준

중국의 연결기준의 연결대차대조표 기준을 보면 제 16 조에서 ‘자회사의 소유주지분에서 모회사의 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소수주주의 지분으로 보아 연결대차대조표의 소유주지분항목 아래에 소수주주지분항목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연결이윤표(문단20)에서 ‘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중에서 소수주주에게 속하는 부분은 연결이윤표의 순이익 항목 아래 소수주주손익항목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기업결합회계기준에서는 공동지배의 경우 취득일 종속회사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기업결합회계기준에서는 매수측이 기업결합을 위해서 지불한 원가(자산 또는 부채)는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매수원가가 피결합회사의 인식가능한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합병이윤표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윤표를 기초로 하여 모회사와 자회사, 자회사간의 상호 내부거래가 이윤표에 대한 영향을 제거한 후 모회사에서 통합하여 제시한다.

한국은 연결기준에서 의사결정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연결기준의 주요한 목적으로 강조하면서 경제적 단위개념을 택한다. 그 예로서

①문단 29.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상회사의 개별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 등의 각 항목별로 합산하여 작성한다. (연결재무제표의 의의)

②문단 30-(가) 종속회사의 자본 중 외부주주지분은 별도의 과목으로 구분하여 자본항목에 표시한다. (외부주주지분 대차대조표상 공시)

③문단 31. 종속회사의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과 지배회사의 투자계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이하 "투자차액"이라 한다)은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한국의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는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으로 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취득일의 영업권인식)

④문단 40. 연결대상회사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채무 기말잔액과 수익,비용 계상액 및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은 상계 제거한다.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은 전액 제거하여 지배회사지분에 부담시

키고,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판매하거나 종속회사가 다른 종속회사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은 전액 제거하여 지배회사 지분과 외부주주 지분에 비례하여 부담시킨다. (내부거래 및 이로 인한 손익 처리)

4)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비교

중국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지분율기준³⁰⁾을 제시함과 동시에 실질지배력기준³¹⁾을 제시한다.

한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문단7 지배회사는 연결 실체 내 개별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례2에서 구체적인 비교를 하도록 한다.

사례2³²⁾.

A사는 20X0년 1월 1일 B사 주식의 80%를 228,000원에 취득하였다. 취득당시 B사의 자본계정은 자본금 200,000원, 자본잉여금 20,000원, 이익잉여금 40,000원이었으며,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일치하였다. A사는 B사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영업권 및 지분법 적용시 투자차액은 10년에 걸쳐 상각하고 있다.

B사의 20X0년 당기순이익은 8,000이다. 이 경우 20X0년 12월 31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각성을 위한 연결조정분개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회계처리]:

투자차액:

취득원가-취득시 B사순자산 중 A사 지분
 $=228,000-260,000 \times 80\%=20,000$

① 20X0년 12월 31일 현재A사의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B 관련 장부금액

지분법적용투자주식B:

20X0.1.1 B 주식취득원가+20X0년 B사 순자산 중 A사 지분

30) 지분율기준이란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발생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에서 과반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다.

31) 지배력기준이란 다른 실체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중에서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경우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다.

32) 한국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사례1.

$$=228,000+8,000\times 80\%$$

$$=234,400$$

지분법이익:

20X0년 B사 당기순이익 중 A사 지분

$$=8,000\times 80\%$$

$$=6,400$$

② 20X0.1.1 및 20X0.12.31 현재 B사 개별 재무제표상의 자본

	<u>20X0. 1. 1</u>	<u>20X0. 12. 31</u>
자본금	200,000원	200,000원
자본잉여금	20,000원	20,000원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40,000원	48,000원 (8,000원)

③ 20X0.12.31 연결조정분개

차) 자본법이익	6,4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B	6,400
차) 자본금	200,0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28,000
자본잉여금	20,000	소수주주지분	52,000 ³³⁾
이익잉여금	40,000		
영업권	20,000		
차) 이익잉여금	1,600 ³⁴⁾	대) 소수주주지분	1,600

[한국의 회계처리]:

투자차액:

취득원가 - 취득시 B사 순자산 중 A사 지분

$$=228,000-260,000\times 80\%$$

$$=20,000$$

투자차액 상각액:

$$20,000\div 10=2,000$$

① 20X0년 12월 31일 현재 A사의 개별 재무제표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B 관련 장부금액

33) $(200,000+20,000+40,000)\times(1-80\%)=52,000$

34) $8,000 \times (1-80\%)=1,6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B:

$$20X0.1.1 \text{ B 주식취득원가} + 20X0\text{년B사 순자산 중 A사 지분} - \text{투자차액상각액}$$

$$= 228,000 + 8,000 \times 80\% - 2,000$$

$$= 232,400$$

지분법이익:

$$20X0\text{년 B사 당기순이익 중 A사 지분} - \text{투자차액상각액}$$

$$= 8,000 \times 80\% - 2,000$$

$$= 4,400$$

② 20X0.1.1 및 20X0.12.31 현재 B사 개별재무제표상의 자본

	<u>20X0. 1. 1</u>	<u>20X0. 12. 31</u>
자본금	200,000원	200,000원
자본잉여금	20,000원	20,000원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40,000원	48,000원 (8,000원)

③ 20X0.12.31 연결조정분개

차) 자본법이익	4,4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B	4,400
차) 자본금	200,0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28,000
자본잉여금	20,000	소수주주지분	52,000 ³⁵⁾
이익잉여금	40,000		
영업권	20,000 ³⁶⁾		
차) 영업권상각비	2,000	대) 영업권	2,000
차) 이익잉여금	1,600 ³⁷⁾	대) 소수주주지분	1,600

35) $(200,000 + 20,000 + 40,000) \times \text{소수주주지분율} 20\% = 52,000$

36) 영업권 = 투자차액

37) B사의 당기순이익 $8,000 \times \text{소수주주지분율} 20\% = 1,600$

제 IV 장 중·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오늘날 시장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됨과 더불어 중국이나 한국에서 체계화된 회계기준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더 고조되고 있다. 기업의 경영이 세계화 되면서 기업의 회계정보이용자도 세계화 되어 가고 있다. 세계경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 중에서 "기업 언어"로서의 회계는 더 이상 어느 한 나라에서만 "통용"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논의의 초점은 기업의 국제적 영업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간 회계기준의 차이를 축소시키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각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하나의 국제회계기준을 필요로 한다. 국제회계기준은 국가간의 회계기준의 국제적 조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장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의 필요성 및 도전 등을 통해서 중국과 한국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현황을 고찰하고 중·한 국제회계기준의 차이점을 논하였다.

제1절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이하 IFRS)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이하 IASC)는 2001년 조직을 새롭게 개혁하여 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로 개칭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와의 상호협조를 통하여 공익적인 관점에서 회계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IASB는 기준의 제정과정에서 세계 각국과의 공동작업에 노력하고 있으며, 구성원도 세계 각 지역과 회계관련업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안분하고 있다. IASCF를 운영하는 IASCF Trustee는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이 가장 많은 4석이 할당 되었고 중국과 일본이 2석씩 차지하고 있다. IFRIC의 12명 위원은 회계분야의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IASB 위원 중 한명이 맡고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IFRS도입이 확산되기 전까지 미국 GAAP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자본시장을 토대로 영향력이 있는 회계기준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미국기업의 여러 가지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예외규정과 지나친 규칙중심기준

(Rule-Based Standard)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 위상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에 미국의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재무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FASB)는 IASB와의 논의를 통하여 IFRS와 미국 GAAP의 지속적인 통합노력을 하고 있다.(Norwalk Agreement, 2002) 이러한 미국 GAAP과의 정합노력은 IFRS를 더욱 발전된 기준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적으로 기준(Principle-Based Standard)을 제시하는 측면이 강하여 해석에 대한 범위를 넓게 두고 있다. 또한 선택적 회계처리 방법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여 기업의 판단과 경제적 실질이 반영된 회계처리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를 기반으로 수립된 국제회계기준은 국제적인 통용 가능성이 높은 기준체계라 할 수 있다.

1)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의 필요성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필요성을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국적 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회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비교 가능한 재무제표작성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각국마다 재무정보의 공시에 대한 요구정도가 다르면 어떤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므로,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은 재무정보의 공시에 대한 요구 정도를 상호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적인 합작기업의 경우 회계기준의 차이 때문에 합작계약의 이행에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넷째,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 해당 국가의 회계기준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보다 회계공시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2) 국제회계기준 도입상의 어려운 문제점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상의 문제점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법적, 규칙 측면에서 여러 나라들의 차이를 극복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둘째, 의제의 합의, 통일된 이사회의 결론 등을 얻기 어려우며,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Principle-Based Accounting)을 만들 것인지 규칙 중심의 회계기준(Rule-Based Accounting)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에서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자의 수탁책임을 반영하는 "개념체계"에 근거한 간소한 회계기준, 실무지침서의 부족으로 인해 적용상의 어려움이

대두 될 수 있고 규칙 중심의 회계기준에서 실무적 적용과 감독을 위한 상세한 실무지침을 포함하는 회계기준, 실무지침이 회계기준화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변화의 속도 조절, IASB의 기금조성과 인재 양성, 일관된 IFRS의 적용 및 제도와 법적 변화가 필요하다.

제2절 중·한의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현황

요즘 국제회계기준의 합치가 초점이 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110여 개국 및 OECD 가입국 중 80%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세계적 추세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였다. 다음은 중·한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현황이다.

1) 중국의 IFRS 도입현황

중국 「재정부」은 2005년 5월부터 IASB와의 검토방안을 합의하여 2005년 11월부터 공동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재정부」가 개념체계에 해당하는 Basic Standard 및 구체적인 회계기준서 38³⁸⁾개를 2006년 2월 15일 공표하였고 2006년 11월 실무적용지침서를 공표하였다. 이는 중국정부가 94년, 95년 회계기준을 수정한 이래 가장 많이 변화된 회계기준이다. 중국정부는 조만간에 이와 관련된 기타의 회계기준들을 발표하여 법규체제를 완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 회계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자산감액 항목이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다른 금액을 계상하여 자산감액에 대비했다가 사후에 다시 되돌려서 기업의 이윤을 조절할 수 있었다. 신 기준에서는 자산감액 준비가 일단 확정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의 변화는 채무조정(債務重組) 규정인데 즉, 채무를 다시 조직해서 만들어낸 이익을 누적자본에 편입시키던 것에서 손익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債務重組가 모두 債務減讓 이기 때문에 重組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어 EPS 조절이 유리하게 되었다. 이밖에 신 기준은 실물로 채무를 갚을 수 있게 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신 회계기준은 2007년부터 개시재무제표부터 실질적으로 상장기업부터 시행하였고 공표와 함께 바로 기업들의 채무담당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또한 2008년 신회계기준의 실시 범위를 중앙 국유기업, 2009년에는 실시 범위를 더욱 넓혀 중국 중대형 기업에 전면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38) < 부록 2 >

(1) 신기준이 중국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첫째, 신 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는 비교가능성이 증가하여 해외투자자가 이해하고 비교하기 쉽도록 하여 해외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였다.

과거 국내외 2개의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은 신 기준의 적용으로 재무제표 작성 원가가 감소할 수 있다.

둘째, 재무제표 중 자산과 부채의 계정과목은 공정가치 평가에 가깝도록 한다.

중국의 신 기업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의 인용은 중국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합치 과정의 상징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배분가능이익의 증가요소가 제고한다.

넷째, 과거 정부보조금, 채무구조조정수익, 비화폐자산의 교환수익이 자본잉여금 계정에서 당기순익으로 반영하게 된다.

(2) 신기준의 적용의 문제점

첫째, 공정가치의 평가에 따른 평가의 객관성, 가측성이 어렵다. 시장경제의 발전을 보면, 중국의 시장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기업 간의 거래의 비정규화, 시장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가치의 형성이 어렵다.

둘째, 금융자산의 계산 및 공시, 기업의 합병 재무제표 작성 등 준수해야 할 리스크공시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다.

기업들은 이번 중국의 신 기업회계기준의 변경 때문에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유한 기업들의 재무제표는 신 회계기준의 수용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고 재무보고비용 및 상장비용을 많이 증가하였다.

셋째, 현행 회계정보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재무회계담당자를 재교육 비용이 발생한다.

넷째, 국제회계기준을 전체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핵심 원칙만을 도입하였다.

2) 한국의 IFRS 도입현황

지난 2007. 3. 15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과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의 세계적 통일화 추세에 적극대응하고 기업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의 수용 시기는<표 4-1>에 정리된 바와 같이 2단계의 단계별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단계는 2009년까지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선택적으로 적용을 한다. 2단계에서는 2011년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 적용이 이루어진다. 적용 직전 연도에는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제회계기준의 이해 제고를 위해 기존 K-GAAP와 K-IFRS를 적용한 각각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그 차이 금액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비상장 법

인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허용하되 적용 이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표 4-1> 한국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기 및 대상

구 분	계획시행시기	적용기업	적용방식
1단계	2009년	적용 희망 기업	선택적용
2단계	2011년	모든 상장기업	의무적용

(1) 한국의 IFRS 도입 기대효과

첫째,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한다.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수용하는 경우에 기대되는 효익은 우선 한국 재무제표의 국제적 신뢰성이 제고되고 국가간 비교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차입조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전 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한다.

2005년말 전 세계 자본시장의 사가총액 US\$ 36조 중에서 주요 회계기준별로 살펴보면, 미국 GAAP US\$ 17조(47%), IFRS US\$11조(31%), 일본회계기준 US\$ 4조(11%)로 나타나고 있다. Fortune 500기업을 대상으로 보면, 미국 GAAP 200개(40%), IFRS 176개, 일본 81개(16%)로서 아직도 미국 GAAP을 위주로 한 미국 자본시장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IFRS의 비중의 계속 증가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 기업들의 이중 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경감한다.

국제회계기준의 전면수용은 해외 경제활동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 재무제표 작성비용의 절감 혜택을 줄 수 있다.

(2) 한국의 IFRS 도입 후 발생 가능한 문제

첫째, 한국 국내의 특유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한국자국의 고유특성이 완전히 배제된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수용은 오히려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 고유거래의 대표적인 예로는 백화점업의 수익인식, 임대주택업의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회계, 외항해운업의 외환환산, 창업투자업의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평가손익 및 감액손실, 투자주식의 분류, 온라인게임산업의 개발비 비용화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한국 국내기업에 과중한 회계비용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기업들은 빈번한 회계기준 변경하면 새로운 회계 인프라의 구축, 회계담당자 재교육 및 추가되는 공시비용 등의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한국 국내법과의 상치로 인한 기업들의 이중적 부담이 우려된다. 상법, 세법과의 상충³⁹⁾ 외감법, 증권거래법과의 상충⁴⁰⁾ 등 법적 관계 검토하여야 한다.

제3절 중·한·국제회계기준의 차이점

국제회계기준과 중·한회계기준의 주요한 차이를 살펴보면 공시체계의 차이, 연결범위의 차이, 자산/부채 평가방법의 차이,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른 기준의 차이, 재무제표 표시의 차이, 측정의 차이 등 6가지 측면으로 종합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4-2>과 같다.

39)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연결재무제표를 주재하는데 현재 한국 상법에는 연결재무제표의 개념이 없이 현재 개정안에 연결재무제표의 각성의무를 두고 있다.

40) 현재 외감법에는 피투자회사를 보는 기준에 대해 지분율 30%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지분율을 50%초과로 규정하고 있고, 외감법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최상위 지배회사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자로 보고 있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모든 지배회사를 연결재무제표작성자로 보고 있어 회계실무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표 4-2> 중·한·국제회계기준의 차이점 비교표

구 분	중국제계기준	국제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
1.공시체계의 차이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등 모든 공시 서류가 연결 회사 전체에 대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⁴¹⁾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등 모든 공시 서류가 연결 회사 전체에 대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공시 ⁴²⁾ -연결재무제표는 부수적, 사후적 연차보고서만 공시
2.연결범위의 차이	-지배의 정의에 근거 하여 종속회사 여부를 결정 -소유지분을 50% 초과 및 실질 지배력	-지배의 정의에 근거 하여 종속회사 여부를 결정 -소유지분을 50% 초과 및 실질 지배력	-소유지분을 30% 초과 최 다출자가 및 실질지배력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의 사유로 일부종속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
3.자산·부채의 평가방법	-국내 회계기준은 정보의 신뢰성을 증시하여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은 취득 원가로 평가.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자산, 부채를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	-국내 회계기준은 정보의 신뢰성을 증시하여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은 취득 원가로 평가.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로 평가 허용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로 평가 허용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로 평가
	-유형자산은 취득원가 평가 또는 공정가치로 재평가	-유형자산은 취득원가 평가 또는 공정가치로 재평가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
4.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른 기준의 차이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 처리방법을 규정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 처리방법을 규정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한 회계처리 규제 또는 허용
	-상환우선주자본 처리	-부채처리	-자본 처리
5.재무제표 표시의 차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 정형화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재무제표표시방법의 다양성 인정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 정형화
	-임대목적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임대목적 부동산은 투자자산으로 분류	-임대목적 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
6.측정의 차이	-동일인지배의 기업결합: 지분풀링법 -비동일인지배의 기업결합: 매수법	-매수법만 허용	-사업 결합시 매수법과 지분 풀링법 허용
	-종업원급여 측정시 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청산기준)으로 측정	-예측급여 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측정	-종업원급여 측정시 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청산기준)으로 측정

41) 중국의 연결재무제표의 공시시간: 상장회사의 기말보고서는 사업종료후 120일, 반기는 종료후 60일, 분기는 종료후 30일

42) 한국의 개별재무제표의 공시시간: 상장회사의 기말보고서는 사업종료후 90일, 분/반기는 종료후 45일.
연결재무제표의 공시시간: 2조원 이상기업(2008년부터)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2조원 미만 기업

위에 중국, 한국과 국제회계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면 지금까지 중국은 자국의 독자적인 회계기준을 유지하면서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일부 받아들였다. 따라서 중국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은 기본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준거하고 있지만 한국에 고유한 상황에 대하여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개방과 국제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또한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대폭수용만으로 회계정보의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어려우며 궁극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완전 수용전략⁴³⁾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사업종료 후 120일-90일 (2013년부터)

43) 완전수용전략: 이는 국제회계기준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V 장 결 론

기업의 경영활동이 급속히 세계화됨에 따라 국가간의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 확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요즘 중국과 한국의 무역 및 투자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개방은 한국과 중국 간의 개별적인 무역 및 투자에서 한국, 중국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중국에서의 규칙의 통합적인 이해가 요구되며, 이는 회계분야도 포함된다. 본 연구는 대 중국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게 중국의 현재 제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중국의 회계기준 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회계기준을 이해와 비교를 통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과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따라가려는 강한 성향을 보이면서도 양국의 회계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자산의 분류, 측정, 평가 및 재무제표의 작성 등이다.

중국회계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첫째로 회계의 목적이 영업활동의 보고와 감독에 있다는 점이다. 즉, 기업·사업·기관 등 단위의 경제활동과 재무수지활동의 상황을 정확·적시·완전하게 기록 보고하고 경제적 작업을 지도 관리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회계계산자료를 정확히 제공하여야 하고, 동시에 회계에 의한 감독을 하고 국가의 정책 법령 제도를 철저히 실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의 회계의 목적이 다양한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의 회계에서는 회계정보이용자가 국가감독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는 회계정보를 통해 회계대상인 기업과 사업, 기관 등의 활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중국은 기업회계기준에 관련되는 많은 사항들이 제시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시행 중 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지정해야할지가 나머지 큰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은 IMF외환위기 이후 회계제도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고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 6년 이후 감사인을 재지정하는 제도 등 다른 나라에 없는 강력한 제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회계투명성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회계환경의 차이는 양국 회계기준상의 차이의 근본원인이다. 즉, 회계정보에 제약을 주는 사회 환경에 따라 회계가치관 및 회계제도가 결정되며 이는 결과적

으로 중국과 한국 회계 상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중국과 한국에서 회계개혁과 회계기준의 제정은 양국경제의 발전수준과 경제체제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수 없다. 회계환경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 가장 적절한 회계기준은 있으나, 가장 완벽한 회계기준은 없다고 본다.

셋째, 자본시장이 점차로 국제화되고 투자자들과 다국적 법인,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비교가능성의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다. IFRS의 도입은 국내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나라가 대외적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통합된 회계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각국의 회계기준 제정 기구가 함께 참여하여 근본적인 재무보고의 개선뿐만 아니라 더 나은 재무보고의 기준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중국과 한국의 회계기준은 자본시장경제의 체제와 국제적 교류에 영향을 받아 꾸준히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선행연구보다, 본연구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한국의 측면에서 중국의 회계기준에 대한 연구로서 그 진행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중국의 관점에서 중국 회계학자들의 한국 회계기준과의 차이에 대한 이해는 미비한 상황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신 기업회계기준(2006)과 한국 회계기준의 차이를 비교하고 선행연구보다 시효성의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회계기준의 현황, 중·한 회계기준의 차이점 및 중·한국제회계기준의 도입상황을 소개하였고 향후의 연구에서는 다음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현행 중국회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기본법인 『회계법』, 『기업회계기준』, 『기업채무통칙』 등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중국의 회계전반을 이해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 세법, 중국의 회계교육제도, 중국의 회계사제도 등 중국의 다른 회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한의 회계기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 회계실무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전역의 많은 기업의 재무제표의 사례를 통하여 실증분석을 고찰하여야 한다. 중·한 기업회계의 차이점을 실무계의 전문가와 함께 연구함으로써 중·한 경제교류의 활성화나 한국의 대 중국투자기업이 중국회계에 대한 충실한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 자본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국내기관이나 향후에 중국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려는 한국 국내기업들이 중국의 회계기준에 대한 몰이해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중국이 장래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경우 한국 회계법인이나 투자자문회사들이 중국진출을 모색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金香淑, 嚴基昊. 2001. 韓國會計的發展歷程. 對外經貿財會(제8호): 35-38
- 許家林, 石教昌. 2000. 韓國\香港\新加坡\臺灣的會計特點及其比較. 對外經貿財會(제7호): 41-47
- 財政部會計準則委員會代表團. 2002. 中日韓三國會計準則制定機構會議綜述. 會計研究(제4호): 53-56
- 薛清梅. 2004. 韓國的會計改革及對我們的啓示. 財會通訊. 湖北省會計學會(제2호): 286
- 高敬峰. 2004. 中韓產業貿易結構分析. 商業時代(제6호): 55-56
- 胡淑紅. 2006. 淺析新會計準則的國際趨同. 會計之友(제7호): 84
- 王青. 2006. 長期股權投資成本法下投資收益的確認. 會計之友(제7호): 25
- 薛芳. 2006. 公司並購中財務風險的評估和融合. 會計之友(제7호): 37
- 鄭基英, 崔順姬. 2006. 韓國財務報告概念框架及其改進方向. 會計研究(제3호): 90-94
- 강철승. 2005. 中國의 國際會計基準 受容現況과 課題.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제6호): 484-512
- 강철승. 2005. 東北亞世亞 南·北·中·日 會計制度 比較研究.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제12호): 331-385
- 강철승. 2006. 동북아 한중일 회계기준 변화과정 비교연구.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제6호): 587-614
- 고권석. 2004. 중국회계해설. 안진회계법인
- 김문철, 안영균, 정혜영. 2006.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수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제9호): 165-194
- 김연화. 2002. 한중 회계처리방법의 비교분석. 경영교육저널(제12호): 35-40
- 정건영, 최순희. 2001. 사회적 환경과 회계환경 및 재무회계의 개념적 체계-한국·대만·중국·조선을 중심으로. 회계저널(제9호): 41-74
- 정운오. 2005. 체제개방 이후의 경제개혁노력을 중심으로 살펴본 중국의 자본시장과 회계제도.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제6호): 456-483
- 최상문, 김확열. 1995. 중국 향진기업주식제 회계제도.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제4호): 107-134
- 최순희. 2006. 연결회계기준의 중한일 비교.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제6호): 565-586
- 최순희. 2005. 중국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제6호): 514-527

최순희, 張亞洲. 2005. 중국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 (제6호): 514-527

劉玉廷. 2004. 중국 회계기준 수립의 현황과 전망.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 (제6호): 709-723

<http://www.casc.gov.cn>

<http://www.cicpa.org.cn>

<http://www.ssrn.com>

<http://www.csrc.gov.cn>

<http://www.kasb.or.kr>

<http://www.fss.or.kr>

<http://www.kicpa.or.kr>

<http://www.sse.com.cn>

<http://www.kaa-edu.or.kr>

<http://www.mof.gov.cn>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China Accounting Standard and Korea Accounting Standard

<Abstract>

Globalization and the interconnectedness of the world economy have resulted in increased economic exchang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d clos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the enterprises of both countries. However, since both countries follow different accounting standards certain difficulties arise in interpreting the information exchanged among the enterprises of both countries. These misunderstanding post challenges for the users of such accounting information of both countries. It is therefore important that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 in the accounting standards of China and South Korea be developed if we are to reconcile these difference and facilitate the further exchanges among the enterprise of both countries.

On the other hand, under the great trend of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the integration of the world capital market, the accounting information as the international common business oriented language has been more and more convergent. Recently most countries in the world have adopte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the Chinese Ministry of Finance also issued New Accounting Standards in February 2006, and the New Accounting Standards is fully compatible with the Chinese national condition and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in agreement with the World Bank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started to reformed Accounting Standards, enhanced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the convergence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The findings of the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dentifying, measuring, recognition, communication of the asset, liability, and capital.

Secondly, the reason for the difference is the accounting environment which is highlighted in this study. There is no the most perfect accounting standards but

the most suitable.

Thirdly, the global convergence of accounting standards is the capital market's develop tendency.

Key Words: Accounting Environment; China Accounting Standards; Korea Accounting Standards; IFRS; Global Convergence of Accounting Standards



<부록 1> 중국회계기준의 발전사

- 1950년: 통일 국영기업회계제도
- 1954년: 국영 공업기업 통일의 회계계정과목 공포
- 1972년: 기본회계기준을 제정
지질탐사회계기준 제정
- 1973년: 국영 기업회계업무를 제정
국영 기업비용지출처리방법 및 원가관리업무규정을 제정
- 1979년: 회계직원조례를 제정
- 1981년: 법인세제도를 도입
- 1985년: 회계법을 제정
- 1986년: 농촌 기업재무제표, 회계제도, 원가범위를 제정
- 1992년: 외국투자 기업회계제도, 주식실험 기업회계제도를 제정
- 1993년: 기업재무통칙 및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농촌 기업 중별기업재무회계제도실시법을 제정
소유제 공업기업 신규 회계제도조정계정과목 처리법을 제정
- 1996년: 회계기초 규범을 제정
- 1998년: 주식사회계기준을 제정
기업 구제회계기준을 제정
회계 서류관리방법을 제정
- 2006년: 신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부록 2> 중국 기업회계기준2006

기본기준

- 『기업회계기준-기본기준』

구체적인 기준

- 『기업회계기준제1호-재고자산』
- 『기업회계기준제2호-자기주식투자』
- 『기업회계기준제3호-투자성부동산』
- 『기업회계기준제4호-고정자산』
- 『기업회계기준제5호-생물자산』
- 『기업회계기준제6호-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제7호-비화폐성자산』
- 『기업회계기준제8호-감액손실』
- 『기업회계기준제9호-직원보급』
- 『기업회계기준제10호-연금기금』
- 『기업회계기준제11호-주식기준보상』
- 『기업회계기준제12호-채무조정』
- 『기업회계기준제13호-우발사항』
- 『기업회계기준제14호-수익』
- 『기업회계기준제15호-건축도급 계약서』
- 『기업회계기준제16호-정부 보조금』
- 『기업회계기준제17호-대여금비용』
- 『기업회계기준제18호-소득세』
- 『기업회계기준제19호-외화환산』
- 『기업회계기준제20호-기업합병』
- 『기업회계기준제21호-리스』
- 『기업회계기준제22호-금융상품의 인식 및 측정』
- 『기업회계기준제23호-금융자산이전』
- 『기업회계기준제24호-위험회피』
- 『기업회계기준제25호-원 보험계약』
- 『기업회계기준제26호-재 보험계약』
- 『기업회계기준제27호-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

- 『기업회계기준제28호-회계정책, 회계추정 및 오류수정』
- 『기업회계기준제29호-자산부채표일 후의 사항』
- 『기업회계기준제30호-재무제표 공시』
- 『기업회계기준제31호-현금흐름표』
- 『기업회계기준제32호-반기 재무보고』
- 『기업회계기준제33호-연결재무제표』
- 『기업회계기준제34호-주당수익』
- 『기업회계기준제35호-세그먼트 보고』
- 『기업회계기준제36호-특수 관계자 및 거래의 공시』
- 『기업회계기준제37호-금융상품 공시』
- 『기업회계기준제38호-처음에 기업회계기준을 집행함』



<부록 3> 중국 재무제표 양식

1. 資產負債表

會企 01 表

編制單位:

年 月 日

單位: 元

資 產	行次	期末 餘額	年初 餘額	負債和所有者權益 (或 股東權益)	行次	期末 餘額	年初 餘額
流動資產：	1			流動負債：	36		
貨幣資金	2			短期借款	37		
交易性金融資產	3			交易性金融負債	38		
應收票據	4			應付票據	39		
應收賬款	5			應付賬款	40		
預付賬款	6			預收賬款	41		
應收利息	7			應付職工薪酬	42		
應收股利	8			應交稅費	43		
其他應收款	9			應付利息	44		
存貨	10			應付股利	45		
一年內到期的非流動 資產	11			其他應付款	46		
其他流動資產	12			一年內到期的非流動負 債	49		
流動資產合計	13			其他流動負債	50		
非流動資產：	14			流動負債合計	51		
可供出售金融資產	15			非流動負債：	52		
持有至到期投資	16			長期借款	53		
長期應收款	17			應付債券	54		
長期股權投資	18			長期應付款	55		
投資性房地產	19			專項應付款	56		
固定資產	20			預計負債	57		
在建工程	21			遞延所得稅負債	58		
工程物資	22			其他非流動負債	59		
固定資產清理	23			非流動負債合計	60		
生產性生物資產	24			負債合計	61		
油氣資產	25			所有者權益 (或股東權 益)：	62		
無形資產	26			實收資本 (或股本)	63		
開發支出	27			資本公積	64		
商譽	28			盈餘公積	65		
長攤待攤費用	29			未分配利潤	66		
遞延所得稅資產	30			減：庫存股	67		
其他非流動資產	31			所有者權益 (或股東權益) 合計	68		
非流動資產合計	32				69		
資產總計	33			負債和所有者 (或股東 權益) 合計	70		

2. 利潤表

會企 02表

編制單位：

年

月

單位：元

項 目	行次	本期金額	上期金額
一、營業收入			
減：營業成本			
營業稅費			
銷售費用			
管理費用			
財務費用（收益以“-”號填列）			
資產減值損失			
加：公允價值變動淨收益（淨損失以“-”號填列）			
投資淨收益（淨損失以“-”號填列）			
二、營業利潤（虧損以“-”號填列）			
加：營業外收入			
減：營業外支出			
其中：非流動資產處置淨損失（淨收益以“-”號填列）			
三、利潤總額（虧損總額以“-”號填列）			
減：所得稅			
四、淨利潤（淨虧損以“-”號填列）			
五、每股收益：			
（一）基本每股收益			
（二）稀釋每股收益			

3. 現金流量表

會企 03表

編制

年度：

單位：元

項目	行次	本年金額	上年金額
一、經營活動產生的現金流量：	1		
銷售商品、提供勞務收到的現金	2		
收到的稅費返還	3		
收到其他與經營活動有關的現金	4		
經營活動現金流入小計	5		
購買商品、接受勞務支付的現金	6		
支付給職工以及為職工支付的現金	7		
支付的各項稅費	8		
支付其他與經營活動有關的現金	9		
經營活動現金流出小計	10		
經營活動產生的現金流量淨額	11		
二、投資活動產生的現金流量：	12		
收回投資收到的現金	13		
取得投資收益收到的現金	14		
處置固定資產、無形資產和其他長期資產收回的現金淨額	15		
處置子公司及其他營業單位收到的現金淨額	16		
收到其他與投資活動有關的現金	17		
投資活動現金流入小計	18		
購建固定資產、無形資產和其他長期資產支付的現金	19		
投資支付的現金	20		
取得子公司及其他營業單位支付的現金淨額	21		
支付其他與投資活動有關的現金	22		
投資活動現金流出小計	23		
投資活動產生的現金流量淨額	24		
三、籌資活動產生的現金流量：	25		
吸收投資收到的現金	26		
取得借款收到的現金	27		
收到其他與籌資活動有關的現金	28		
籌資活動現金流入小計	29		
償還債務支付的現金	30		
分配股利、利潤或償付利息支付的現金	31		
支付其他與籌資活動有關的現金	32		
籌資活動現金流出小計	33		
籌資活動產生的現金流量淨額	34		
四、匯率變動對現金的影響	35		
五、現金及現金等價物淨增加額	36		
加：期初現金及現金等價物餘額	37		
六、期末現金及現金等價物餘額	38		

4. 所有者權益(股東權益)變動表

會企 04表

編制單位：

年度：

單位：元

項目	行次	本年金額					上年金額					
		實收資本 (或股本)	資本 公積	盈餘 公積	未分配 利潤	庫存股 (減項)	所有者權益 合計	實收資本 (或股本)	資本 公積	盈餘 公積	未分配 利潤	庫存股 (減項)
一、上年年末餘額												
加：會計政策變更												
前期差錯更正												
二、本年年初餘額												
三、本年增減變動金額（減少以“-”號填列）												
（一）本年淨利潤												
（二）直接計入所有者權益的利得和損失												
1. 可供出售金融資產公允價值變動淨額												
2. 現金流量套期工具公允價值變動淨額												
3. 與計入所有者權益項目相關的所得稅影響												
4. 其他												
小計												
（三）所有者投入資本												
1. 所有者本期投入資本												
2. 股份支付計入所有者權益的金額												
3. 其他												
（四）本年利潤分配												
1. 提取盈餘公積												
2. 對所有者（或股東）的分配												
3. 其他												
（五）所有者權益內部結轉												
1. 資本公積轉增資本（或股本）												
2. 盈餘公積轉增資本（或股本）												
3. 盈餘公積彌補虧損												
4. 其他												
五、本年年末餘額												